



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 람	기관의 장

수영구보
호외 제312호 2014.9.19(금)

조례,고시

-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----- 2
-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----- 5
-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----- 8
- 도로명 주소 고시 ----- 11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· 발행 : 수 영 구 · 편집 : 문화공보과 (610-4071~3)

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
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
이에 공포한다.

2014년 9월 19일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

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739호

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739호

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도로명주소대장 규칙」 및 「도로명주소안내시설 규칙」”을 “「도로명주소대장규칙」 및 「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8호서식”을 “제14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17조”를 “조례 제9조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지방공사·공단”을 “지방공사 및 지방공단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제15조에 따라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“실을 수 없는”을 “계재할 수 없는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, 휴대용 화장지, 부채, 자, 저금통, 달력, 접지형 지도,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”을 “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4항 중 “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한다”를 “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◆ **개정이유**

- 도로명주소위원회 임기, 별지 서식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함.

◆ **주요내용**

- 가.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시행규칙 조항 변경(제11조)
- 나.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물 예시 삭제(제12조)
- 다. 도로명주소위원회 잔여임기 변경(제14조)
- 라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

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
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
이에 공포한다.

2014년 9월 19일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

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740호

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” 를 “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19조” 를 “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2조” 로, “부산광역시수영구문화예술진흥기금” 을 “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부산광역시수영구문화예술진흥기금” 을 “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4호” 를 “제5호” 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2조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

제3조제4호 중 “문화예술” 을 “지역문화” 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」 제10조제6항 중 “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” 을 “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” 으로 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본다.

◆ **개정이유**

- 2014. 7. 29. 시행인 「지역문화진흥법」의 부칙 제2조에 따라, 법시행 전에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기금 명칭 변경
- 지역의 문화예술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‘지역문화’를 정의하고 있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의 제정 취지에 맞게 기금의용도 상 문화예술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역문화로 변경

◆ **주요내용**

- 가. 「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」를 「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 조례」로 제명 개정
- 나.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개정 (제1조 ~ 제2조)
- 다.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개정 (제3조)

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
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
이에 공포한다.

2014년 9월 19일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

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741호

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구청장” 을 “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지명위원회업무담당과장”으로, “소관업무담당주사” 를 “지명위원회업무담당주사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◆ **개정이유**

- 지명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함.

◆ **주요내용**

- 간사 및 서기 명칭 변경 (제2조제5항)
 - 간사 : 총무과장 ⇒ 지명위원회업무담당과장.
 - 서기 : 소관업무담당주사 ⇒ 지명위원회업무담당주사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4-70호

도로명주소 고시

『도로명주소법』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년 9월 19일

수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남천서로 17-1 외 6건

▷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종전주소 (지번주소)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별치 참조(4건)					

▷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	변경사유
해 당 없 음			

▷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

종전주소(도로명주소)	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	폐지사유	비고(지번주소)
별치 참조(3건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청 토지정보과(☎051-610-4761)에 문의 또는 수영구청 홈페이지(www.suyeong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4. 9. 19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